



성연재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초상권과 알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경기한파에 세상이 각박하다보니 사람들의 얼굴 인식도 팍팍해졌나보다. 이제는 누구나 초상권이라는 말에 더 이상 생소해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보조데스크를 하는 나로서는 초상권이라는 이 세글자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신문사 데스크들도 마찬가지리라. 언제부터 신문사, 통신사 사진부 데스크는 매일처럼 초상권이라는 지뢰를 밟지나 않을까 가슴 졸이며 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나 통신사에 근무하다 보니 사진이 캡션과 함께 올라가면 바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올라가 초상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불려가는 일도 특히 잦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 신참 기자에게 촬영한 사진에 자신의 옆얼굴이 나왔다고 투덜거리는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초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장이 위원회를 다녀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부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이 10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으로 무마됐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진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콩알만 하게 찍힌 그 사람의 옆얼굴이 찍혀 있었다.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일 업무에 시달리는 언론사 데스크들은 복잡한 송사에 시달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의 어느 겨울이었을 것이다. 추운 겨울 스케치를 하려고 카메라를 메고 종로 길거리에서 추위에 종종걸음치는 사람들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초상권이라는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줄타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일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사진을 보도해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구했다. 그러기를 한시간이 지나고 동의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20여 명이 넘어가는 등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런 스케치 사진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을 취재한 경우에도 결국 초상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조정신청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기자가 위원회에 더 이상 불려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 위원회의 조정엔 응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 시 청계천 앞길에서 호위를 들고 서 있는 시민을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 지난해 위원회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연합뉴스의 최 모 사진기자는 얼굴을 머물러로 감고 있는 시민이 호위를 읽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발행을 했다. 그 기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얼굴을 가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민은 그 기자의 사진을 가지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결국 백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사안인데 그 복잡하고 바쁜 시점에 어떻게 사람들이 호위를 읽고 있는 장면을 동의를 얻어서 낼 수 있단 말인가? 자꾸만 이렇게 초상권만을 보호하려 든다면 사진기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피사체가 신문을 들고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사진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상해보라. 주요한 사안에 나오는 사진은 거의 얼굴이 없는 사진이 될 것이고 경제면에서 모델을 동원해 쓰는 사진이나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 사진들만 신문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필자도 초상권 시비에 시달리기 원치 않아서 가능한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뒤통수만을 찍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된다는 점을 고백한다. 사진기자는 사진 속의 얼굴이나 표정으로 독자에게 현장을 전달한다. 물론 억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핍하면 한 건 잡았다는 식의 초상권 피해 청구와 진짜 피해는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 🇰🇷